

제302회 정례회  
2011. 7. 22.(금)

# 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  
행정문화위원회

# 「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심사보고서

2011. 7. 22.(금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발 의 자 : 김영주 의원 외 6인
- 나. 발의일자 : 2011년 7월 1일
- 다. 회부일자 : 2011년 7월 7일
- 라. 상정일자 : 2011년 7월 15일

(제30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)

### 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 : 생략)

### 가. 제안이유

- 청남대는 도소속 기관임에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, 청남대 관광활성화 자문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와 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고,
- 승용차 입장 실시, 야간개장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신설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- 제명 변경 : 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→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
- 운영위원회 삭제(안 제2조) :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, 자문위원회 및 발전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.
-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(안 제3조)
  - 매표시간 : 08:30분부터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
  - 관람시간 :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조정 가능
- 무료입장권(안 제4조제4항) : 지역상가 15만원 구입시 무료입장권 2매 → 10만원 구입시
- 사용료 반환(안 제10조)
  - 사용개시일 전 : 10%를 공제한 잔액
  - 사용개시일 이후 : 사용일 공제 후 잔액
  - 사용일 이후 : 반환신청 불가
- 관람료 징수(안 제12조) : 공연, 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징수
- 주차료 징수(안 제13조)

구분		당일(1회당 요금)
16인승 이상 승합차		3,000
15인승 이하 승합차		2,000
승용차		2,000
1,000cc 미만 경차		1,000
화물차	1톤초과	3,000
	1톤이하	2,000

- 사무의 위탁(안 제14조) : 주차장 운영관리 신설
-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문구 정비 등

### 3. 검토보고 요지

(행정문화전문위원 : 손자용)

금번 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

청남대가 도소속 기관임에도 민간인 위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주요사항을 심의하게 되어 있는 등 현실에 맞지 않아 이를 폐지하고, 청남대 관광활성화 자문 및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자문 위원회와 협의회를 두도록 하는 등 청남대 운영과정에서 노출된 문제 점을 개선·보완하고,

승용차 입장 실시, 야간개장 등 청남대 관광활성화 계획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관련 조항을 신설하며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조례개정에 따라 청남대의 관광활성화와 효율적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의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

## 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청남대 관리·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### 충청북도청남대 운영 조례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청남대의 관리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원회 등 설치) ① 충청북도청남대(이하 “청남대”라 한다)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 소속하에 청남대자문위원회(이하 “자문위원회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청남대와 주변지역과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를 둘 수 있다.

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와 협의회의 구성·기능·운영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개관 및 관람시간) ① 청남대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
1. 1월 1일, 설날, 추석 및 매주 월요일

2. 시설의 보수, 공사, 재해복구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

② 청남대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: 09시부터 18시까지

2. 12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: 09시부터 17시까지

- ③ 입장권 대표시간은 08:30부터 관람 종료 1시간 30분 전까지로 한다.
-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대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.

제4조(입장료) ① 청남대를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(이하 “관람자”라 한다)은 별표 1의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면제한다.

1. 국민과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
2. 6세 이하의 영·유아
3.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
4. 청남대의 각종 문화행사 등에 직접 출연 또는 참여하는 자
5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86조제1항 각 호의 자
6.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5조에 해당하는 자
7. 「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해당하는 자
8. 「5.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52조제1항 각 호의 자
9. 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1~6급까지의 장애인에 한하며 단, 1~3급까지 장애인은 보호자 1인을 포함한다.
10. 문의면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다른 방문객을 안내하는 자
11.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자

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료를 할인하여 징수한다.

1. 충청북도민으로서 그 신분을 입증할 수 있는 자 : 단체입장료에 준함
2. 소장과 사전 협의하여 관광협약을 체결한 각종 기관 단체 및 사업체의 행사 등에 참석한 후 그 영수증(확인서 등)을 소지한 개인·단체가 익일 까지 입장할 때 : 별표1의 입장요금에서 1천원을 할인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입장권을 지급 할

수 있다.

1. 관광버스로 단체입장 하는 경우 : 관람객 15명당 1매
  2. 문의면 지역의 상가나 식당에서 1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식사를 하고, 당일 그 영수증(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)을 제시하는 경우 : 2매
- ⑤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귀책사유가 관람객에게 있지 아니 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.

제5조(입장금지 및 행위제한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금지 한다.

1. 타인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한 자
  2. 안전관리상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자
- ② 관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1. 지정된 장소 외 흡연 또는 취사행위
  2. 지정된 전시물 외의 전시물을 만지거나 통제지역에 출입하는 행위
  3. 음주 및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
  4. 야생화 및 산나물 채취행위

제6조(요금표 등 게시) 소장은 매표소 부근에 입장요금표와 관람객 준수사항 등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.

제7조(시설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) ① 청남대의 이미지 제고 및 주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설치·운영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.

1. 상설전시 및 기획전시장

2. 각종 문화 예술공연 및 행사
  3. 야외예식장(야외 웨딩촬영 포함)
  4. 영화, 드라마, 광고(CF) 등 촬영
  5. 강당, 세미나, 회의실 등 부대시설
  6. 관람객 편의 제공을 위한 판매시설
  7. 그 밖에 청남대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시설물을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전에 운영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 신청 접수 순위에 따라 승인한다. 다만, 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8조(사용료 납부 및 감면)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.

1.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, 주관하는 행사
2. 충청북도가 후원, 협찬하는 공연 및 각종 행사
3. 문화예술단체가 비영리 목적으로 직접 행하는 문화예술행사로써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
4. 수탁업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시설
5.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감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
제9조(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) 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

1. 공익상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2.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받은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
3. 제11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

②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.

1. 사용허가의 내용과 상이한 행위를 한 경우
2.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청남대의 시설 등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
3. 소장이 공익상 관람시설 확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체시설을 제공한 경우

제10조(사용료의 반환) ①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할 수 있다.

1. 사용개시일 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료 10%를 공제한 잔액
2.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: 사용일을 공제한 잔여일의 사용료

② 사용일이 경과한 후에는 사용료의 반환신청을 할 수 없다.

제11조(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)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청남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.

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소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

③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청남대의 자료와 시설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전시 및 체험물품 등

의 관리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.

제12조(관람료 징수) ① 소장 및 제7조제1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공연 및 전시에 따른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관람권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료는 소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징수하여야 한다.

제13조(주차료 징수) 소장은 청남대 주차장 사용자에게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, 주차요금은 별표2와 같다.

제14조(사무의 위탁) 청남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.

1. 청남대 경비
2. 청남대 관광안내
3. 청남대 조경 식재 및 전문관리
4. 청남대 환경미화
5. 각종 문화·전시 행사
6. 주차장 운영 관리
7. 제7조제1항 각 호의 운영 및 관리 등

제15조(상표 등의 사용) ① 청남대관리사업소가 등록한 상표 등을 활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의거 소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청남대 홍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무상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.

③사용료, 납부시기,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.

제16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청남대운영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.

[별표 1]

입 장 요 금 표

(단위 : 원)

구 분	주 간		야 간 (17:30분 이후 입장자)	비 고
	개 인	단 체		
어 른	5,000	4,000	4,000	19세 ~ 64세
청소년	4,000	3,000	3,000	13세 ~ 18세
군 경 등				하사 이하의 자와 전투경찰순경 · 의무소방 원
어린이	3,000	2,000	2,000	7세 ~ 12세
노 인				65세 이상

[별표 2]

주 차 요 금 표

(단위 : 원)

구분	당일(1회당 요금)	
16인승 이상 승합차	3,000	
15인승 이하 승합차	2,000	
승용차	2,000	
1,000cc 미만 경차	1,000	
화물차	1톤초과	3,000
	1톤이하	2,000

[별표 3]

## 청남대 시설 사용료

(단위 : 원)

시설명 및 사용구분		장소 및 규모	사용료	비 고
본관	내부촬영	1층 2층	1,000,000	· 1일 10시간 기준(시간당10만원) · 드라마, 영화, 광고(CF) 촬영
	외부촬영	본관주변	100,000/ 1시간당	· 드라마, 영화, 광고(CF)촬영 ※ 내부촬영후 외부촬영은 별도 사용료 없음
기획전시관		관리동	30,000/일	냉·난방비 별도
세미나실		“	30,000 1회/2시간	“
회의실		“	20,000 1회/2시간	“
이벤트실		“	50,000/일	“
강 당		“	50,000/일	“
웨딩 촬영		청남대내	100,000	승용차 2대(5명 기준)
영화, 광고(CF) 촬영 등		청남대내	500,000	골프장, 헬기장 등 청남대내 시설 및 장소
야외 결혼식장		헬기장		하객1인당 단체입장료에 준한 사용료 징수

※ 야간 사용료는 100% 할증

## ■ 냉·난방비 기준

- 세미나실(1회 1시간 기준) : 난방비 40,000원, 냉방비 30,000원

## ■ 가산금 적용 : 매1시간 초과시마다 기준요금의 20% 가산

## ■ 시설 사용료는 위 기재된 금액을 원칙으로 하되 기타 명기되지 않은 시설 사용료는 상호협약에 의한다.

[별지 1]

공유재산(시설·상표) 사용(시설)·변경 신청서

신청인	단체명				전화 (FAX)	자택 (사무실)	
	대표자					휴대폰	
	주소						
신청사항	사용시설	기본시설			부속시설	마이크, 빔프로젝트, 냉·난방기, 기타	
	사용목적						
사용기간	년 월 일 시 분부터						
	년 월 일 시 분까지( 일간)						
변경신청	신청사유 : 변경사항 :						
입장료	유무	대인	원		소인	원	사용인원 명 (남 , 여 )
위와 같이 청남대 시설·상표를 사용(설치)하고자 신청합니다. 붙임 : 운영계획서 1부 년 월 일 신청자 ( 기관 · 단체 ) (인)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 귀하							

공유재산(시설·상표) 사용(설치)·변경 허가증

기관(단체)명		대표자		전화 (FAX)	
주소					
사용목적					
사용인원	명 (남 , 여 )		사용기간	년 월 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시 분까지	
사용재산					
위와 같이 청남대 시설·상표를 사용(설치) 허가 합니다. 년 월 일 충청북도청남대관리사업소장(직인)					

관련법령 발취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